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 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